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6월 14일

감천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임 *규	임 *규 1968-05-11	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농바우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6-11
조 *진	조 *진 1983-09-10	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현내2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6-11